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8
----------	----

2022년 9월 2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29일, 봉양순 의원 외 14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2년 9월 26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봉양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42조제2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한파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상황에서 수도사용자등의 수도계량기 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보온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수도사용자등이 보온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4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: 피재황)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보온조치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법률적 근거

- 현행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32조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관리자를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”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 조례 제40조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¹⁾에 대한 관리책임, 제42조는 수도계량기의 훼손·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

제 40 조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42 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(생략)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) "급수설비"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(옥내급수관 포함)·수도계량기·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(기구)를 말한다.

2) 수도계량기 관리책임(주체)에 관한 경과 사항 관련

-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 부담 주체(수도사용자, 서울시)에 관하여 동 조례 개정이 2002년 이후 4회 이루어진 바 있음.

2002년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2013년에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, 지난 2021년²⁾에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관리소홀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에게 다시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<수도계량기 관리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현황>

개정시기	비용 부담 주체		개정 사유
	수도계량기 대금	설치비	
2002.12	수도사용자	서울시	·수도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 관리책임 전가
2013.03	서울시	서울시	·자연재해시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 한계점 인정
2019.09*	서울시	서울시	·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관리책임 강화 (수도계량기 보호통 훼손, 분실에 관한 사항 추가)
2021.05	수도사용자	서울시	·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

3) 개정안 검토(안 제42조제2항)

- 2022년('21/'22) 수도계량기 동파는 3,621건으로 전년대비 67%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동절기 한파³⁾ 일수가 줄어든 자연적 요인이 크긴 하나 보온재(30만개)와 동파안전계량기(25,450개) 확대 설치, 시민홍보 강화 등 상수

2) 제안사유: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되고 있어,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

3) -12℃ 이하 2일 지속 or 전일보다 -10℃ 하강 등, 한파일수는 '21년 7일, '22년 4일 발생

도사업본부의 적극행정과 함께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강화한 현행 조례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<최근 2년간 수도계량기 원인별 동파현황(11.15 ~ 3.15 기준)>

(단위: 건수)

연도별	계	보온 미비	장기 외출	노출	보호통 뚜껑미비	보호통 파손	심도 부족	휴무 상가등
계	14,516	11,091	2,854	401	11	51	14	94
'21~'22년	3,621	2,452	870	237	8	39	2	13
'20~'21년	10,895	8,639	1,984	164	3	12	12	81

- 다만, 최근 한파가 발생할 경우 수도사용자의 적절한 보온 조치나 동파안전 계량기 설치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효과에는 한계⁴⁾가 있어 전적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, 에너지 취약계층⁵⁾이 집중된 노후 건물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다수 발생⁶⁾하고 있고, 결국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 안 제42조제2항과 같이 수도사용자가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교체 비용(수도계량기 대금 + 설치비용)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다만, 안 제42조제2항 시행에 앞서 일선 현장에서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

4) 보온조치된 계량기 동파 건수 : 3,481건(96.1%)

동파안전계량기 동파 건수 : 350건(9.7%) - 보온조치된 계량기 동파건수와 중복

5) 에너지취약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(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제1항제7호)

6)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동파 : 126건(3.5%)

기 보온조치 여부, 관리소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
또한, 2022년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에서도 보듯이 여전히 보온 미미가 주요 동파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. 수도계량기 동파는 비용발생 뿐만 아니라 수도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동파예방 조치와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.

- 한편, 2022년(‘21/‘22)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로 수도사용자에게 부과된 수도계량기 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.

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기 수도계량기 대금 부과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미뤄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 본문 중 “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”를 “시의 부담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<u>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시의 부담으로</u> ----- ----- . <u>다만,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